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송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건명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번지 소재 구분건물 [참편한아파트1동 제3층 301호]
감정서번호	가람 1025-03-0011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51)556-3600 FAX:051)556-3050



감정평가서 개요 OVERVIEW OF APPRAISAL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외 1필지 참편한 아파트1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구분건물	이용상황	아파트

감정평가액

구분	층 / 호수	수량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건물	제3층 제301호	1개호	192,000,000	비준가액
감정평가액 합계			192,000,000	

임대내역

주택 (방수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주택 외 (갯수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기타	귀 조합 요청에 의거하여 임대관계는 생략하였음.			

물건상황 / 참고 및 유의사항

현황 및 관리상태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다소양호 <input checked=""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다소불량 <input type="radio"/> 불량
물적동일성여부	규모 및 이용상황 등 제반 현황 감안시 물적동일성 인정됨.
안정성, 환가성 시장성, 주위환경등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소재 영산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 건물 1개호)으로서, 안정성, 환가성, 시장성 및 주위환경 등 제반여건은 보통임.
참고 및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서 개요 OVERVIEW OF APPRAISAL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

- 주소 :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 301호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로터리길 17, 301호
- 열람일 : 2025.03.10

순번	세대주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비고 (소유자와의 관계)
1	이현	2021.04.09	거주자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종록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김종록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이백만원정(₩192,000,000.-)		
의뢰인	송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평가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송도신용협동조합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규진건설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03.06	2025.03.06
			작성일
			2025.03.1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92,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92,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신명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소재 영산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집합건물)으로서 금융 기관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번지 외 1필지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로터리길 17]		
건물명 및 층·호수	참편한아파트1동 제3층 제301호		
건물 개황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915	1,868.3341	-/7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싱글마감)지붕	아파트	2018.10.24	

일련번호	층 / 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 면적(㎡)
가	3/301	아파트	84.9849	19.1774	104.1623	51.2475
합계			84.9849	19.1774	104.1623	51.2475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인 2025년 03월 06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5년 03월 06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 음.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귀조합 요청에 의거하여 일반건축물대장등분상 첨부도면을 기준하여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내부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대상물건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바,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본건의 면적, 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공부를 기준하였으며,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배치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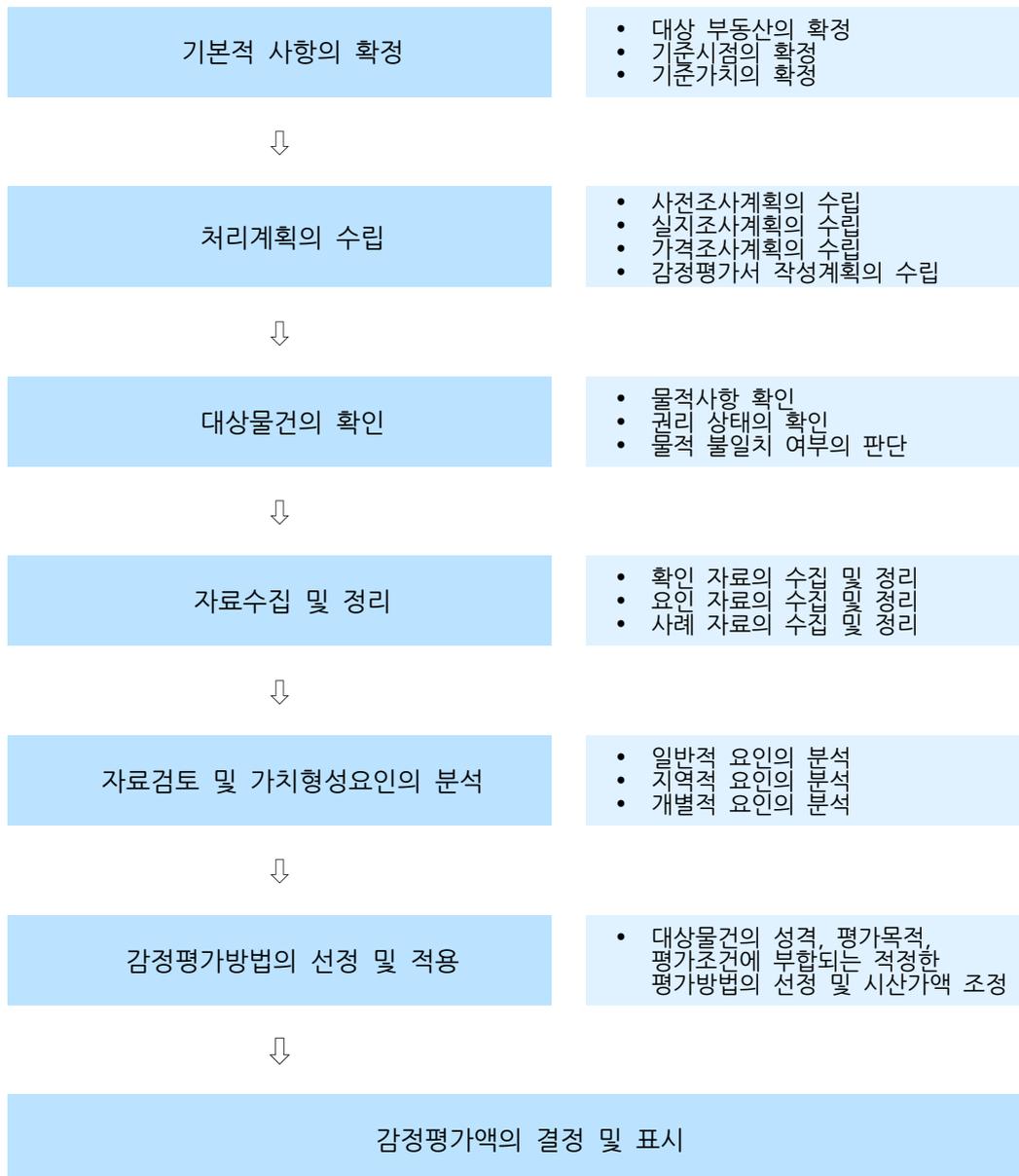
2. 토지 및 건물의 배분가액 표시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법원감정평가실무” 등의(집합건물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 기준)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공매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타입)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아파트	3층	2,200,000 내외	본건 (가) 유사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서리 220-1 선진파크빌 101 / 6 / 606	아파트	69.7257	157,000,000	2,250,000	2024.03.14	2015.07.21
#2	성내리 289 미루빌 - / 3 / 301	다세대주택	69.16	198,000,000	2,860,000	2024.07.25	2024.06.14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사용승인일
#ㄱ	서리 220-1 선진파크빌 101 / 4 / 404	아파트	83.9427	190,000,000	2,260,000	2023.05.26 경매	2021.03.13
#ㄴ	성내리 289 지상미루빌 - / 3 / 301	다세대 주택	69.16	156,000,000	2,260,000	2024.07.10 담보	2024.06.14
#ㄷ	동리 137-4 참편한아파트 1 / 3 / 302	아파트	84.9849	192,000,000	2,260,000	2024.12.31 담보	2018.10.24

4.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 분석

(출처 : 부동산태인)

용도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아파트	412,000,000	345,452,213	83.85	11	3	27.2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비교사례 선정
가	#1

나.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서리 220-1 선진파크빌 101 / 6 / 606	아파트	69.7257	157,000,000	2,250,000	2024.03.14	2015.07.21

※ 거래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실지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사정보정치	1.000

3. 시점수정

■ 본건 일련번호 가 / 사례 기호 #1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출처 :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구 분	적 용 치	비 고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5.4	2024.02.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4.1	2025.01
시점수정치	0.98637	94.1 / 95.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 [본건 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1]

요인 구분	세부 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건물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외부요인 대등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건물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경과연수 등에서 우세함.	1.03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0.99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였음.	1.00
개별요인 비교치			1.0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1	2,250,000	1.000	0.98637	1.020	2,263,719	84.9849	192,381,933	192,000,000
합 계									19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상기 “감정평가액결정에 참고한 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감정평가전례) 등과 비교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공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건물명 층/호수	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1/3/301	84.9849	192,000,000	비준가액
결정된 감정평가액			19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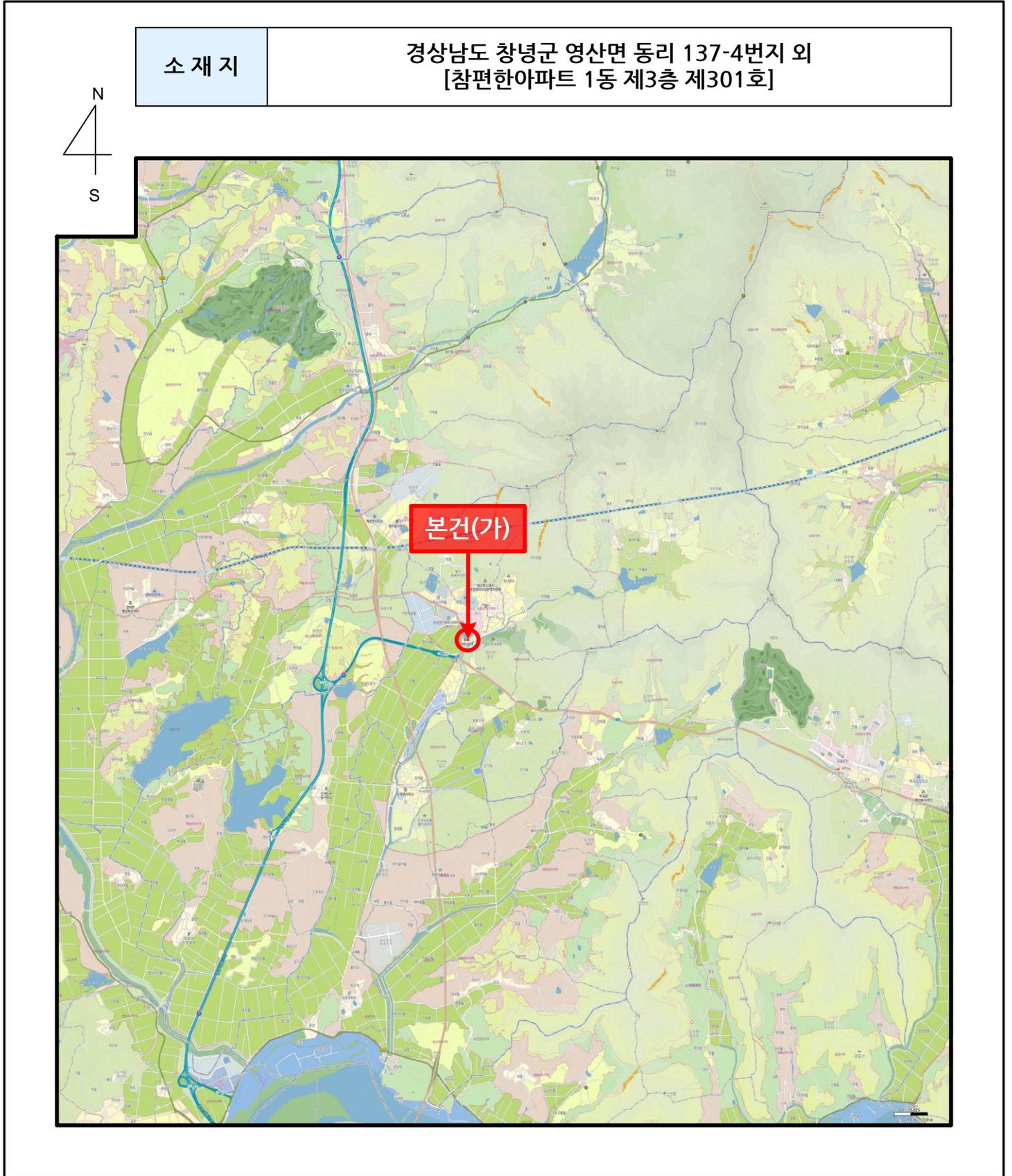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로터리길 17	137-4 137-6 참편한아파트 1동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싱글마감) 지붕 7층					
							1층	40.6193	
							2층	304.6818	
							3층 ~ 7층	304.6066	
2	동소	137-4	대		425				
가	동소	137-6	대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1호	84.9849	84.9849	192,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공용면적포함 104.1623㎡	
			소유권 1.-----	51.2475	51.2475				
			대지권	915					
						토지 · 건물 토지 : 건물 :	57,600,000 134,400,000		
합 계							₩192,000,000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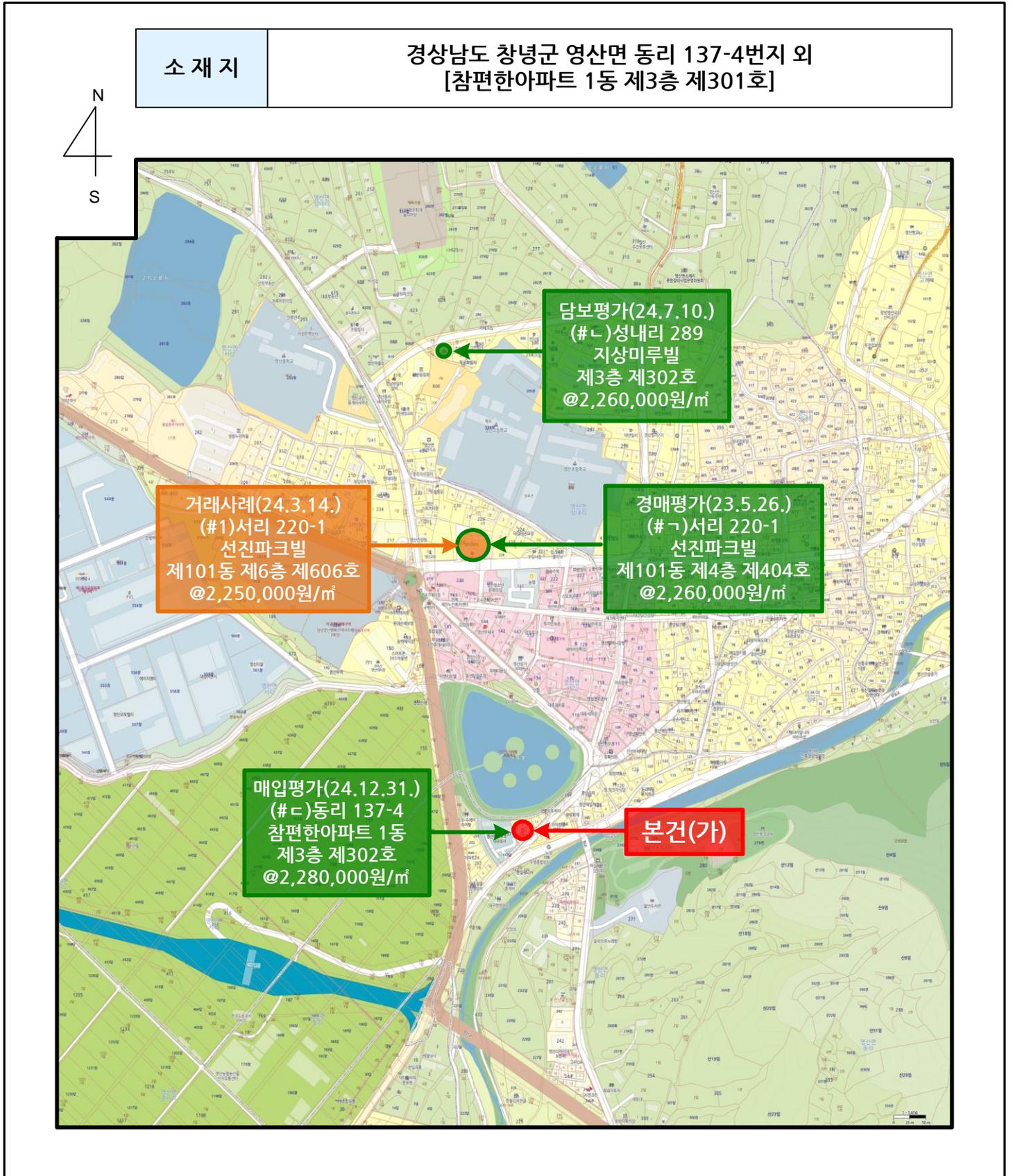
(구분건물) 개별요인 분석표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번지 외 1필지
건 물 명 칭 및 호 수	참편한아파트1동 제3층 제301호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등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서리 소재 영산면사무소 동측 인근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기존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접 면 도 로 상 황	본건 남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건 물 의 구 조 및 마감재 등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싱글마감)지붕 7층 건물로서,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 새시조 2중창임.
이 용 상 황	아파트(폐문부재)로 이용중임.
부 대 설 비 등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화재감지기, 개별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임 대 상 황	미 상.
공 부 와 의 차 의	없 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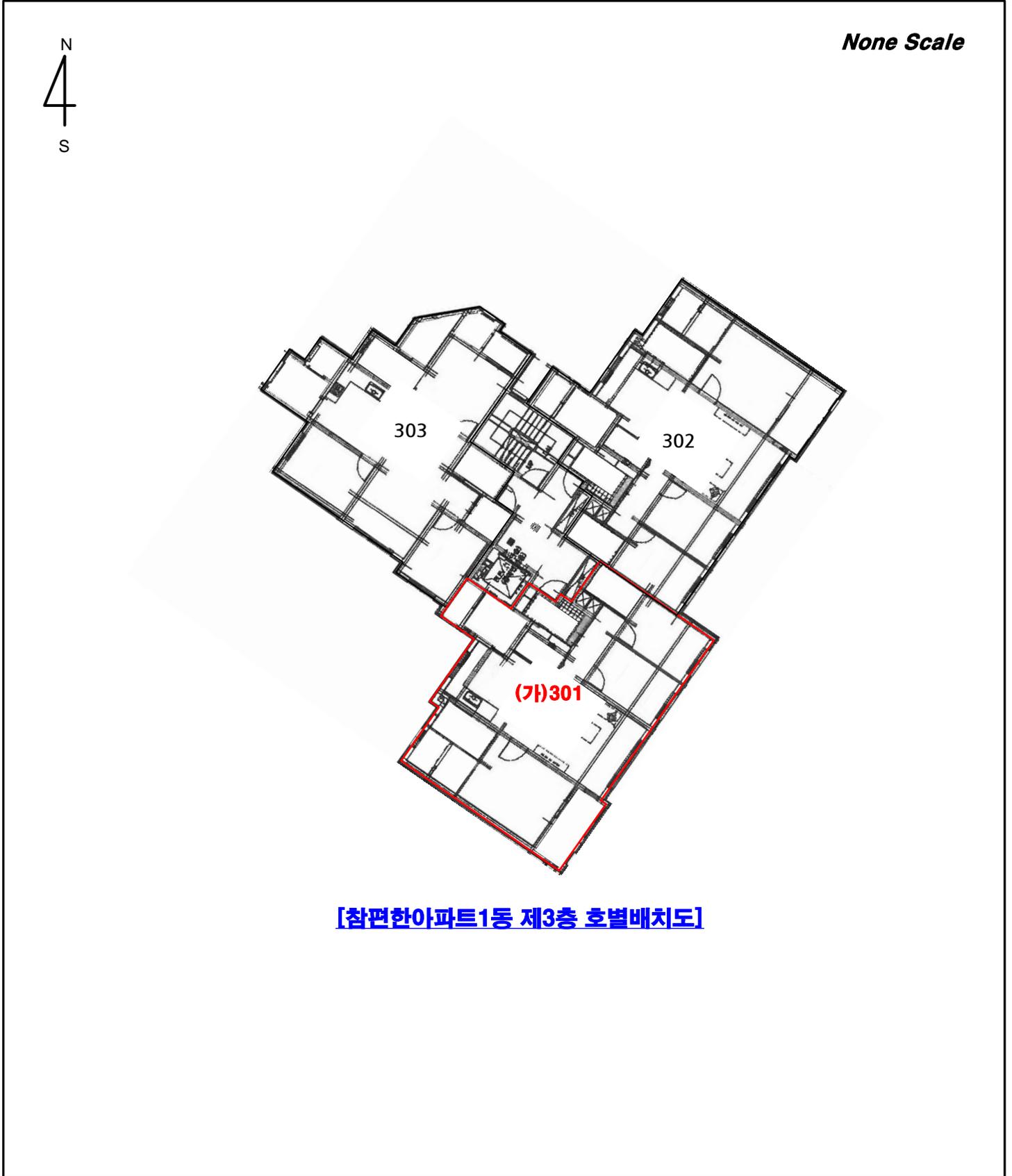


상세위치도



호별 배치도

기호 : ()



사 진 용 지



[본건]



[본건]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우)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2,(온천동)(온천장 SK허브올리브 제206호)
E-Mail: kaaram09@kapaland.co.kr 홈페이지: http://kaaram.com/

TEL: 051)556-3600
FAX: 051)556-3050

문서번호 1025-03-00115
시행일자 2025.03.10
수 신 송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제 목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1. 우리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 조합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3.06 일자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번지 소재 구분건물 [첨편한아파트1동 제3층 301호]』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 부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청 구 서 1 부
3. 수수료산정내역서 1 부 끝.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수수료 청구서

감정서번호: 가람 1025-03-00115

2025.03.10

송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사십팔만구천오백원정 (₩489,500.-)

2025.03.06일자 귀 제『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 동리 137-4번지 소재 구분건물[참편한아파트1동 제3층 301호]』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324,960	200,000 + (142,000,000 × 11/10,000 × 0.8) ≒ 324,960
실비		
여비	106,4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1,500	
비		
기타실비	2,500	
소계	120,4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445,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44,500	물건조사비 10,000 여비교통비 106,400 토지이용 0 토지대장 0 건축물대장 0 지적도 0 등기사항 1,000 기타 500 특별용역비 0 사진용지 2,000 임대차조사 0 전입세대 500 세무서열람 0 기타 0
합계	489,500	
기납부착수금	0	
정산청구액	₩489,500	

■ 송금처

부산제일신용협동조합(131-019-410992) 예금주: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 수수료 입금 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 번호 1025-03-0011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16조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TEL: 051-556-3600 FAX: 051-556-3050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607-85-24931



수수료산정내역서

수신 송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감정서번호 가람 1025-03-00115 호
 정산청구액 사십팔만구천오백원정(₩ 489,500.-)

감정평가액		1.0배분 평가액	1.5배분 평가액		총액	
		192,000,000	-		192,000,000	
기초수수료	평가가액	적용가액	수수료율	요율	산정금액	
	5천만원 이하	50,000,000	200,000	0.8	200,000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42,000,000	×11/10,000	0.8	124,96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10,000	0.8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8/10,000	0.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7/10,000	0.8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6/10,000	0.8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5/10,000	0.8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10,000	0.8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3/10,000	0.8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10,000	0.8		
	1조원 초과		× 1/10,000	0.8		
합계					324,960	
평가수수료	1.0배	200,000 + (142,000,000 × 11/10,000 × 0.8) ≒ 324,960			324,960	
	1.5배				-	
	소계				₩324,960	
실비	여비				106,400	
	토지조사비				0	
	물건조사비				10,000	
	기타				4,000	
	소계				₩120,400	
공급가액	평가수수료 + 실비			₩445,000		
부가세	공급가액 x 0.1			₩44,500		
기납부 착수금				₩0		
정산청구액	공급가액 + 부가세 - 기납부 착수금			₩489,500		

※ 공급가액은 1,000원 미만 절사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

